

2023년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

우리 원은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.

연번	상담내용	상담결과	조치사항
1	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문의	<p>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무관련성이 없다면, 1회 100만원 까지 가능함 직무관련성이 있다면, 근무평정이나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(축의금·조의금 5만원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, 조화 10만원) 이하로 가능함 <p>다만, 직무의 내용, 당사자의 관계,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</p> <p>※ 관련 법령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, 청탁금지법 시행령 [별표1]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</p>	-